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12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5일

제115회(정례회)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조정 및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개정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증원 내역 : 총8명 (1,298명 -> 1,306명)

(행정6급 1명, 행정7급 3명, 전산8급 2명, 기능직 2명)

1) 지방행정혁신기획단설치에 따른인력증원 2명(행정6급 1명, 행정7급 1명)

-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887(2005.10.14)호

- 존속시한 : 2007년 6월 30일

2)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정원보강 : 2명(행정7급 1명, 전산8급 1명)

-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652(2005.09.30)호

- 존속시한 : 2006년 12월 31일

3) 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보강 : 2명(행정7급 1명, 전산8급 1명)

-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7855(2005.10.14)호

- 존속시한 : 2006년 12월 31일

4) 신여권발급관련 여권담당공무원 정원보강 : 2명(기능9급 1명,기능10급 1명)
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704(2005.10.06)호

○ 직급별 정원조정내역

1) 일반직 정원조정 내역 : 5명(+)

- 일반직5급 : 1명

·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조정 기준비를 7%이내에 있으며,

. 정무시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정원승인 (총8명)이 있어, 일반직 5급 정원 1명이 증원 사유 발생

- 일반직6급 : 3명

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확정 기준비율 19% 이내로 정원을 조정

- 일반직9급 1명

. 정보화사업관련 웹디자인 전산 계약직 채용

- 일반직8급 5명 정원조정

. 일반직 8급 결원이 21명으로 5명 정원을 감원조정

2) 기능직 정원조정 내역 : 18명

- 기능6급 3명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에 의거 직급별 정원확정 기준 비율 3% 이내로 정원3명 조정

- 기능7급 6명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에 의거 직급별 정원확정 기준 비율 6%이내로 정원 6명 조정

- 기능8급 9명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에 의거 직급별 정원확정 기준 비율 14%이내로 정원 9명 조정

- 기능직10급 18명 정원조정

. 현재 기능직 10급 결원이 64명으로 18명 정원을 감원 조정

다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03조(지방공무원단체의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담-2652(2005. 9.30)호 : 사업별예산제도 정원보강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담-2704(2005.10.06)호 : 여권담당공무원 정원보강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담-7855(2005.10.14)호 : 복식부기 확산 전담인력 승인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담-2887(2005.10.19)호 : 지방행정혁신 인력보강
- 기획예산과-7013(2005.11.01)호 : 지방계약직공무원(전산분야)
- 예산조치 : 확보되었음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관제)

-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03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(대통령령18701호)제21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253호) 별표5에 근거한 것으로서,
- 각 사업별 정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고, 관계법규에 근거 하였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직급별 정원의 비율은 행정자치부령 제253호(2004.9.24)별표5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비율에 의할 때 8급의 경우 기준비율 31%이내를 초과한 32.7%입니다. 그러나 이는 행정자치부령제200호(2003.5.1)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 비율대로 책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적법한 비율이라 하겠으며, 다만, 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, 정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억8천만원 임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